

美國의 特許協力條約(PCT) 公告

—1978. 3. 17字 PCT告示 21號—

美國政府는 1970年 6月 19日 워싱턴에서 成立된 特許協力條約 第64條(4)項(a)에 따라 公告하였다.

따라서 1975年 11月 26日에 同條約批准書를 寄託할때에 이에 配慮한 通告書를 WIPO事務總長에게 寄託했으며 同條約第64條 4項(a)에 따라서 事務總長에게 寄託한 通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宣言하였다.

“美國 國內法이 美國內의 實質上의 出願日에 대하여 先行技術이란 見地에서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이 主張한 優先日을 同一視하지 않기 때문에 美國은 特許協力條約 第64條 4項(a)에 따라서 美國밖에서 美國을 表示해서 國際出願을 한 것은 先行技術이란 見地에서 美國內에서 出願하는 것과 同一視할 수 없음을 公告한다. 美國을 表示한 國際出願을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 따라서 國際的으로 公表할 경우, 國際出願의 先行技術効力은 同日字로 發効한다. 그러한 國際出願이 國際的으로 公表되지 않는 경우, 先行技術効力은 美國特許廳과 商標管理局이 同國際出願의 英文書類와 國內出願料 그리고 發明家의 宣誓나 公告를 接受한 日字에 發効한다.”

美國政府의 公告는 1978年 5月 10日에 發効한다.

(WIPO提供)

登錄商標使用基準 強化

—日本, 3年不使用이면 失効—

日本特許廳은 商標의 使用義務를 強化하는 新制度를 『登錄商標使用의 認定에 관한 審査基準』으로 發表하여 지난 6月 25日부터 適用하고 있다.

制度強化의 骨子는 更新登錄出願의 경우 出願前 3年 동안 商標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출원을 拒絶하여 權利를 失効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登錄商標를 指定商品 以外에 사용하거나 商標에 變更를 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取消된다. 이로써 企業에서의 商標管理는 緻密해지게 되었으며 특허청은 또한 기업들 사이의 紛爭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상표는 發明이나 考案과는 달라 그 自體에 價値가 있는 것이 아니다. 一定한 營業者가 그 商標를 오랜 동안 사용함으로써 그 營業者의 業務上의 信用을 商標에 依存 즉 商標에 신용이 蓄積됨으로써 財產의 價値가 있으며 法律도 이 信用을 保護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商標權은 永久權이 될수가 있으며 법률은 10年마다 갱신등록을 認定하고 쓸모가 없는 商標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商標는 整理함으로써 취소된 商標를 새로이 사용하려는 第3者에게는 그 機會를 賦與하고 公序良俗에 반하는 商標의 사용방지로서 公衆의 被害를 豫防하려는 것이다.

다만 사용 또는 不使用의 判斷은 극히 困難하며 過去에는 불사용의 商標를 취소하기 위하여 審判制度를 두었으나 請求要件이 嚴하여 實効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商標中間商이 橫行하고 各企業의 死藏商標가 激增하여 商標관리에 여러問題가 發生하였다.

1975년에 이르러 이같은 事態를 解消시키기 위하여 審判을 強化하는 한편 갱신등록출원 때에 使用說明書를 提出시켜 出願前 3年間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空虛한 權利를 정리하고자 법률을 制定公布하고 3년 뒤인 올해 6월 25일부터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新制度에 의거한 등록상표의 使用範圍限界가 문제로 擡頭하였다. 즉 商標를 등록하고자 할때 商標등록을 받으려는 商標를 表示한 書面(商標見本)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實際로 市場에서 商標를 商品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 상품전본과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商標의 形狀, 種類, 顧客層의 年代등에 따라 商標를 조금씩 변경하여 쓰는 것이 常例이다. 이 경우에도 불사용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業界의

意見이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등록상표사용의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이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文字의 書體變更등은 등록상표사용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明朝體와 고딕체, 書體와 筆記體, 漢字의 正字자 略字, 로마字의 大文字와 小文字의 相互變更 등이다. 또 縱書와 橫書, 右書와 左書등의 상호변경등도 인정한다. 다만 같은 文字라야 함은 말할나위 없다. 더우기 등록상표에 普通名稱등을 附加하여 顯著하게 樣態를 변경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

등록상표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事例는 히라가나와 가다카나, 로마字와 히라가나 또는 가다카나의 상호변경, 그리고 한자를 그외의 것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등이다. 또한 一定한 觀念이 생기는 문자, 圖形의 변경도 不認하며 靑鳥를 BLUE BIRD로 고치는 따위도 안된다.

使用說明書에는 상표사용의 事實을 表示하는 資料를 添附해야하나 이에는 寫眞, 商品카탈로그, 商品廣告등 상표와 상품관계가 具體的으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社內報, 상품의 効能書, 상품의 사용설명서, 라벨, 레텔, 名札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包裝 또는 容器에 대하여는 일정한 상품에 專用되고 상표의 상품관계가 明確히 표시되어야하되 百貨店의 包裝紙는 對象外이다.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는 聯合商標에 관한 特例가 있으며 그 以上의 상표가 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어느 것이나 사용하면 그중 어느 것이건 취소되지 않는다. 연합상표는 基本商標에 類似한 範圍에 대하여 商標權者에게 權利를 取得시켜 他人의 侵害로부터 容易하게 防衛케하며 自己商標權의 범위를 擴大시키는 效果가 있다.

그러나 연합관계라하여 모두 갱신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雙方의 상품에 어느정도의 關聯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PCT(特許協力條約)同盟 準備委員會

—78年會期 2.6~10. 제니바서 召集—

PCT(特許協力條約)同盟의 第1次會議(1978年 4月 10日~14日 開催)의 準備를 위하여 PCT準備委員會가 WIPO事務總長에 의하여 1978年 2月 6日~10日 제네바에서 召集되었다.

準備委員會會議에 參席해달라는 招請狀이 會期 以前의 特許協力條約(PCT)을 批准 또는 公式承認한 17個會員國에 發送되었다. 이 중 12個會員國에서 代表를 派遣했다. PCT의 批准 또는 公式承認은 하지 않았으나 PCT의 臨時委員會의 會員國인 國家에게도 傭서버를 派遣해달라는 要請에 따라 10個國에서 傭서버를 派遣했다. 그리고 2個의 政府間機構 및 5個의 國際非政府間機構에서 代表가 參席했다.

準備委員會가 議決한 重要事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PCT本會議의 節次規程

準備委員會는 이 委員會가 準備하고 修正한 草案에 包含된 節次規程을 本會議에서 採擇하도록 建議했다.

2. 傭서버承認

準備委員會는 本會議가 會期에 ① 特別傭서버로서 PCT同盟豫算에 分擔金을 支拂한 PCT同盟의 非會員國, 유럽特許廳 및 아프리카知的所有權機構와 ② 傭서버로서 PCT同盟會員國이 아니고 特別傭서버의 地位도 갖지 못한 파리同盟의 全會員國, 4個의 政府間機構와 15個의 國際非政府間機構를 承認하도록 建議했다.

3. 國際出願書提出日字 및 國際豫備審査要請書提出
準備委員會는 本會議가 國際出願書提出日字로서 1978年 6月 1日로 確定할 것을 建議하고 同出願書의 國際豫備審査申請書를 提出하도록 要望했다.

4. PCT規則의 修正

準備委員會는 本會議가 規則 4條10項(a)(國際出願書類提出日 以前 1年內에 確定되지 않은 日字의 訂正이

나 取消에 관한 條項), 第11條 6項(a) 및 (b)(國際出願書類 第1페이지 上端의 작은 餘白에 관한 條項) 第11條 13項(a)(黑色線단을 使用해서 圖案을 作成해야하는 條項), 第49條 2項(a)() 및 48條 3項(c)(發行目的으로 複製情報을 포함한 國際調查報告書의 部分削除에 관한 條項).

이 準備委員會는 또한 本會議가 새로운 規則 32bis(國際出願의 國際發行時까지 優先請求의 撤回) 및 74bis(國際豫備審査當局에 대한 優先請求의 撤回通告)를 採擇하도록 建議했다.

5. 手數料 및 價格

(準備委員會는 PCT豫算問題實務陣이 PCT手數料 및 PCT刊行物의 價格에 關하여 作成한 結果에 대해 本會議의 注意를 喚起시키기로 議決하고 最初의 手數料 및 價格은 實務陣에서 策定한 것보다 낮은 水準에서 確定시켜야 한다는 것이 準備委員會 大多數의 意見이라는 것을 本會議에 通告하기로 議決하였다.

6. PCT諸般委員會

準備委員會는 本會議가 PCT技術援助委員會, PCT技術協力委員會 및 PCT管理 및 司法委員會의 設立, 會員國資格과 節次規程에 관한 諸般議決事項을 採擇하도록 建議했다.

7. PCT同盟第1次會期の 本會議 議題草案

이 準備委員會는 第1次會期の 本會議 議題草案을 承認했다.

8. 事務總長의 進行報告

事務總長은 런던, 뮌헨, 파리, 워싱턴 및 시카고에서 開催했던 세미나를 包含해서 PCT刊行物印刷準備 및 PCT에 관한 情報普及에 대하여 出願受理國으로서 指定 또는 예정된 特許廳, 國際調查機關 및 豫備審査機關이 될 各國 特許廳의 交涉經緯를 準備委員會에 報告했다.

9. 參加國과 機構

① 參加國: 오스트리아,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아프리카, 이집트, 프랑스, 西獨, 헝가리, 日本, 룩셈

부르크, 말라가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세네갈, 蘇聯,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英國, 美國(22 個國)

② 政府間機構: 유럽特許廳, 臨時地域特許委員會.

③ 非政府間機構: 유럽經濟人聯合會, 유럽辨理士會 國際發明家協會, 國際辨理士協會, EC經濟人聯盟

④ 執行部議長: P.프레소네(佛)

副議長: E.부락크(蘇), B.야야가르가(카메룬)

⑤ A.보그슈 WIPO 事務總長, 파너, K.事務次長 F. A.스비디로부 外 6名. (WIPO 提供)

商標登錄條約(TRT) 臨時諮問委員會

— 第3次會議 78. 2. 21~24. 제네바에서 開催 —

商標登錄條約(TRT)의 締結準備을 위한 臨時諮問委員會가 1978年 2月21日~24日 제네바에서 第3次會議을 開催했다. 同委員會의 22個會員國中 11個國에서 代表를 派遣했으며 파리同盟의 2個會員國과 12個 非政府機構에서 옵서버를 派遣했다. 同委員會는 國際局이 準備한 文案을 根據로하여 管理指針草案 및 其他樣式草案을 檢討하기 시작했다. 이 委員會는 詳細한 討議를 거쳐서 上記草案의 修正에 대한 建議書 및 論評을 作成한다. 또한 國際局이 提出한 文案을 根據로하여 開發途上國을 위한 開發協力活動에 관한 討論을 개시했다. 代表들이 自身들의 經驗을 土台로 作成한 報告書는 가장 建設적인 意見交換의 契機를 마련했다. 同委員會는 文書에 記錄한 開發協力事業을 完全히 支援할 것을 議決하고 WIPO가 會員國과 協力해서 계속하여 이를 遂行하도록 할 것도 決議했다.

끝으로 同委員會는 商標登錄條約(TRT)의 批准이나 이에대한 公式承認에 관한 問題들을 討議했다. 모든 代表團은 自國의 事情에 關하여 報告하고 모두가 商標登錄條約에 至대한 關心을 表明한 事實에도 不拘하고 TRT에 대한 自國의 批准과 發効에는 時間이 걸린 것이라는 見解를 밝혔다. 事務局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4개 개발상대국(콩고, 가봉, 어퍼볼타, 토고)이 이미
상표등록협약(TRT)을 공식承認함으로써 마침내는 상
표등록협약의 發効에 單하나의 批准이나 公式承認이
必要하다는 事實에 注意를 喚起시켰으며, 이것은 管理
指針이나 必要한 樣式을 可能한 限 早速히 利用해야 한
다는 것을 意味한다. 國際局은 다음會期에 對備한 管
理指針과 모든 必要한 樣式의 새 草案을 準備하도록 要
請을 받았다.

1. 參席國 및 機構

① 國家: 핀란드, 西獨, 헝가리, 日本, 노르웨이, 포
르투갈, 蘇聯, 스페인, 스웨덴, 英國, 美國.

② 옵서버 參加國: 아르헨티나, 필리핀.

③ 非政府機構: 美國辨護士協會, 美國特許法協會, 베
네룩스商標및 意匠協會, 西獨工業協會, 公認辨理士協
會, 유럽工業協會, 商標代理人協會, 世界商工會議所,
유럽辨理士協會, 太平洋地域工業所有權協會, 美國商標
協會.

④ 執行部: 議長 B.A.미니(美)

副議長: B. 룬드버그(스웨덴), M. 보그나(헝가리)

⑤ WIPO: 事務次長 K.파너

工業所有權局長, L.마오이머 外 4人

(WIPO 提供)

9월에 開催된 3次定期會議에서 正式議題로 다룬바
있으며 1977년 10월에 조약안이 公表되었었다.

이 조약은 實質規定과 管理規定 및 終結條項으로 構
成되는데 前文 22條로 되어 있다.

第1條 定義로부터 시작한 조약의 骨子는 前文에서
2가지의 重要한 目的을 밝히고 있는바 ① 發見者의
姓名을 科學發見과 함께 公표하는 制度를 創設하여 差
別없이 發見자를 激勵함으로써 科學發展을 促進하고
② 科學發見內容을 理解시키는 制度를 만들어 科學界
와 社會福利를 위하여 새로운 과학발견의 情報를 發見
시켜 나가는데 寄與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國際科學發見記錄制度는 科學情報에 容易하게
接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國家 특히 開發途上國
에 利益을 供與하도록 祈하고 이미 記錄된 과학발견을
最大限活用 할 수 있는 便宜를 제공하며, 기록된 과학발
견의 自由로운 이용에 障礙를 주지 않고 條約當事國이
記錄된 科學發見者에게 權利를 賦與하거나 또는 부여
하지 않는 自由裁量權을 認定하고 있다.

(WIPO 提供)

科學發見記錄制度에 관한條約

— 제네바外交官會議서 採擇 —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를 設立한 協定文 第2條
8項의 “知的所有權”의 定義에서 “科學發見에 관한 權
利”를 明示하고 있거니와 이와같은 權利를 과학발견의
優先權者로서 認定하여야 한다는 原則에 따라 科學發
見記錄制度에 관한 제네바國際條約「(Geneva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rding of Scientific Disco-
veries)이 1978年 3月 3日 제네바外交官會議에서 採
擇되었었다.

이 條約案의 채택을 위해 WIPO總會는 지난 1976년

